제187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73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2 ~ 74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2 ~ 75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 ~ 76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73

제출연월일	2012. 10.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군민자전거(‘그린씽’)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따라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공자전거에 대한 주인의식고취 및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민자전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제3항, 별표)

구 분		회 원	비회원	비 고
기본 사용료 (3시간 이내)		▪1년권 : 20,000원 ▪30일권 : 3,000원	▪1일권 : 1,000원	○기본사용료의 사용시간 범위에서 반복이용은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추가 사용료	3시간 초과	▪시간당 500원	▪시간당 1,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9. 12. ~ 2012. 10. 0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3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성) ①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군민자전거 사용료(제13조제3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회 원</th><th>비회원</th><th>비 고</th></tr>
<tr><td colspan="2">기본
사용료
(3시간 이내)</td><td>▪1년권 : 20,000원
▪30일권 : 3,000원</td><td>▪1일권 : 1,000원</td><td rowspan="2">○기본사용료의 사용시간 범위에서 반복이용은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td></tr>
<tr><td>추가
사용료</td><td>3시간
초과</td><td>▪시간당 500원</td><td>▪시간당 1,000원</td></tr>
</table>

※ “회원”이란 군민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군민자전거 사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3조(군민자전거 운영) 제3항

• 군민 자전거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 및 운영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창조정책과장 이 환 철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 ~ 74

제출연월일	2012. 10.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수입을 협의회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치근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나.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4조)
다.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5조)
라. 협의회 회의·간사·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제8조)
마. 협의회 재정운영 및 회계연도에 관하여 정함(안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나. 예산조치 : 37,800천원(2013년도 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8.28. ~ 9.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비율이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군단위에는 각 협의회 회장 및 보건의료 관련 지식이나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각 1명씩을 둔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총무는 협의회 재정을 관리한다.
⑤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⑥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임원 및 위원이 사임,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적립금과 진료수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운영 중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써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보 건 소 장 강 석 재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75

제출연월일	2012. 10.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도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공포(2012.6.21.)되어 도내 동일한 행정처분의 필요에 따라 현행 2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규정을 변경함(안 제10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2만원 부과

⇒ 3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9. 03. ~ 9. 2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표지판 및 안내판”을 “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 **안내표지판** ----------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안내표지판** ----------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안내표지판** ----------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 **3만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제10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거창군보건소장 강 석 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76

제출일자	2012. 10. 02.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기간 및 병원 진료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게 최선의 진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병원 업무 범위를 변경함(안 제3조)

○ 치매환자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나. 위탁기간을 변경함(안 제4조)

○ 10년 이내 ⇒ 5년 이내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상위법에 맞게 인용 법조문과 용어 정비함

(1) 「지방자치법」 제135조, 「의료법」제30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의료법」제33조(안 제1조)

(2)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4조, 제12조)

(3)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안 제3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8.13. ~ 9.0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매환자”를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에 둔다.

제3조제1호·제2호·제3호 중 “치매환자”를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치매”를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특별법」에 의하여”를 “특별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망실, 손괴”를 “잃어버리거나 파손”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그 외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치매환자”를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로 한다.

제9조 제목 “공유재산 사용 등”을 “공유재산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공유재산을”로 한다.

제12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관한----------
제2조(위치) 노인요양병원은 거창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2조(위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에 둔다.
제3조(업무) 노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	제3조(업무) ----------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4.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
제4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사업비(병원건립비, 의료장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제4조(설치·운영) 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 1. --------사람----------사람

현 행	개 정 안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생 략)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생 략)	2. ---------**특별법에 따라**-------- ----------**사람** 3. ----------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잃어버리거나 파손**---------- ----------
제6조(관리규정) (생 략) 1. ~ 3. (생 략)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 6. (생 략) 7.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규정)**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그 밖의**---------- 5.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수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료수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8조(입원 및 퇴원)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입원 및 퇴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제9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 사용)** ----------**공유재산을**----------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2조(위탁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현행과 같음)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보건소장 강 석 재